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77
----------	-------

발의연월일 : 2025. 9. 3.

발 의 자 : 박해철·박균택·박 정
송옥주·권칠승·장종태
김정호·김동아·임호선
최혁진·조계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자녀의 학교·유치원 방학, 감염병 등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등으로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연차휴가 등으로 그 공백을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이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단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의 제한이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이에 보다 다양한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및 제19조의4제1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2주로 하며,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19조의4제1항 후단 중 “사용한 횟수는”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제4호 중 “제19조제1항·제4항”을 “제19조제1항·제4항·제6항”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육아휴직)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19조(육아휴직)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2주로 하며,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u>
<u>⑥ (생략)</u>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u>사용한 횟수는</u> 육아휴직을 나누	<u>⑦ (현행 6항과 같음)</u>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 -----. ----- ----- <u>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u>

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37조(벌칙) ① ~ ③ (생 략)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6. (생 략)	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1항·제4항·제6항 ----- ----- ----- ----- ----- ----- -- 5.·6. (현행과 같음)
--	---